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



AUGUST 2016
Vol. 37

8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는

담배업계의
전략적 활동



AUGUST 2016
Vol. 37

8

C O N T E N T S

Infographic

02

-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라! 02

Monthly Updates

04

- 이달의 정책 04
- 이달의 연구 06

Monthly Highlights

08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 09
- 담배업계의 국가 금연정책 저해 전략 10
- 담배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14
- 담배규제 정책,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 15

Monthl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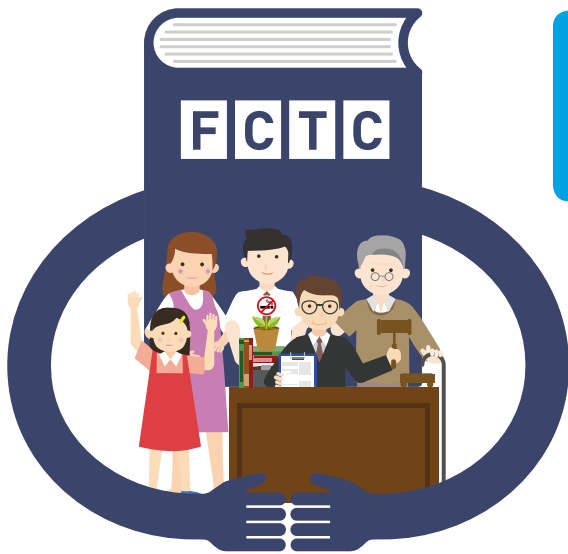
16

- 흡연 시작 연령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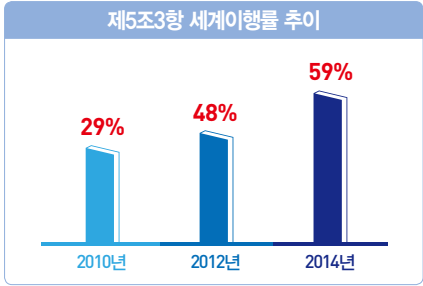


1 FCTC 제5조3항 및 가이드라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



※세계이행률 : 해당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당사국 비율

제5조3항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담배 위해성 및 담배업계 저해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담배업계와의 제한적 교류 및 투명성 확보



담배업계와의 파트너십 거부



정부관계자 및 공무원과의 이해충돌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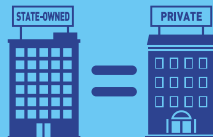
담배업계의 소위 '사회공헌활동' 규제



담배업계 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담배업계에 특혜 미제공



국가 소유의 담배업계의 경우, 기타 담배업계와 동일하게 취급

2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전략



로비활동을 통한 정책 입안 저지

미국 담배업계, 로비활동에

연 **246**억 원 지출
(\$ 2,200만)



위장단체(Front Group)를 이용한 반대여론 조성

호주 담배업계, 규격화 무(無)광고포장 도입 저지 위해 위장단체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 AAR)를 조직하여

약 **56**억 원 후원
(\$ 5백만)



법적 제소를 통한 정책 시행 지연 및 방해

다국적 담배회사, 우루과이 규격화 무(無)광고포장 제동을 위한 소송에

최소 약 **78**억 원 지출
(\$ 700백만)



정책의 예측 효과 및 관련 분야 연구 결과 오도

영국 담배업계, 경제분야 정책연구소 (The Adam Smith Institute 등)에

약 **6,400**만 원 후원
(£ 4만 4,000)



소위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한 마케팅

미국 담배업계, 흡연의 선택권 및 책임이 청소년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흡연예방 캠페인에

연 **23**억 원 지출
(\$ 210만)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전략 Interference by the Tobacco Industry



※ 출처
- Tobacco Tactics.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2016. 8.
Monthly Updates

이달의 정책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싱가포르, 물담배 및 코담배 등 신종담배 금지 시행

싱가포르에서 담배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들은 이달부터 물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등 신종담배를 수입, 도매 및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조치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무연시가, 전자담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니코틴 포함 모든 액상에 대한 금지 조치에 이어 신종담배에 대해 두 번째로 시행된 조치이다. 이는 2014년 11월에 도입되었으며,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가 사업을 조정하고 기존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올해 7월 말까지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신종담배 및 물담배를 수입, 도매 및 판매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0,000싱가포르달러(약 81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과 최대 20,000싱가포르달러(약 1,622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아일랜드, 미성년자에의 담배판매 규제 강화

아일랜드 보건부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부는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즉각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소매점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등 강화된 처벌로 판매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절차가 실시되며, 공청 기간이 종료된 후 벌금 및 최소 영업정지 기간 등 구체적 규제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부는 현재 허가 및 등록된 장소에 한해서 가능한 담배 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하여 영업 규제 범위를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보건부 대변인은 “2025년 담배 없는 사회(Tobacco-free socie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담배제품에의 노출과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해당 조치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헝가리,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및 규격화 무(無)광고포장 실시

헝가리가 이달부터 담뱃갑 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담배제조업체는 이달 20일부터 켈런 제품 앞면과 뒷면에 65% 크기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며, 종전의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앞면 30%, 뒷면 40%) 재고는 내년 5월 20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기점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켈런 및 말아피는 담배(roll-your-own)에 규격화 무(無)광고포장(plain packaging)이 적용됨에 따라 규정된 색상과 서체로 브랜드 이름만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는 유럽연합(EU)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을 이행하는 조치로써, 이달 16일 헝가리 정부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다.



세네갈, 공공장소 흡연 및 학교 주변 담배판매 금지

세네갈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이 공공장소 흡연금지, 담뱃갑 경고문구,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 제한 등을 담은 담배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호텔 및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교육기관 인근 200m 이내 담배판매, 담배제품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었으며, 담뱃갑에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세네갈 금연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담배 소비로 인해 세네갈의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리게 되었다며, 해당 법안의 시행을 적극 지지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담배업계에 6개월, 호텔 및 음식점 소유주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담뱃세 인상 및 신종담배 세금 부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州)가 2009년 말 이후 7년 만에 켈런 한 갑당 담뱃세를 1달러 인상하여, 미국 내에서 담뱃세가 열 번째로 높은 주가 되었다. 이로써 한 갑당 1.6달러(약 1,760원)였던 담뱃세가 이달부터 2.6달러(약 2,860원)가 되었으며, 주 정부 및 연방정부 소비세 등 모든 담뱃세를 포함하여 한 갑당 소매가격이 약 8.27달러(약 9,1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0월부터는 전자담배에 40%의 도매세금이 부과되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시가(cigar) 및 시가릴로(cigarillo)를 제외한 각종 신종담배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다.

이달의
연구



이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담배 소매점 근접도와
금연 및 재흡연의 관계에 관한 연구

Pulakka, A., Halonen, JI., Kawachi, I., et al. (2016). Association Between Distance from Home to Tobacco Outlet and Smoking Cessation and Relapse. *JAMA Intern Med.* doi:10.1001/jamainternmed.2016.4535.

담배 판매점과의 접근성이 감소되면 금연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에 관한 종단적 연구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 판매점과 주거지의 근접도 변화가 흡연 행태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과 2012년 시행된 핀란드 공공부문조사(Finnish Public Sector study)와 2003년과 2012년 시행된 보건 및 사회지지조사(Health and Social Support study)에서 주거지 주소, 담배 판매점 주소 및 흡연상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주거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담배 판매점까지의 도보거리의 변화가 흡연자의 금연과 과거 흡연자의 재흡연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체 간 분석(between-individual analysis)에 로지스틱 회귀, 교차설계분석(case-crossover design analysis)에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흡연자 혹은 과거 흡연자 총 20,729명으로, 기반 조사(baseline) 및 추적조사(follow-up)에서 자가보고 방식으로 현재 흡연 혹은 과거 흡연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기반조사 시 흡연자였던 경우, 주거지에서부터 가장 근접한 담배 판매점까지의 거리가 500m 증가하는 것은 개체 간 분석에서 금연 확률을 16% 높였고(pooled OR=1.16, 95% CI=1.05-1.28), 개체 내 분석(within-individual analysis)에서 57%(pooled OR=1.57, 95% CI=1.32-1.86) 높였다. 반면, 가장 근접한 담배 판매점까지의 거리 증가는 과거 흡연자의 재흡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주거지와 담배 판매점까지의 접근성 감소가 흡연자의 금연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인에서 흡연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

성한나, 김종성. (2016). 한국인에서 흡연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 *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33(2), 57-66.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흡연 행태와 우울 증상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결과를 이용하여 흡연 상태를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으로 나눠 우울증 및 우울 증상 여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17,871명(남자 7,571명, 여자 10,300명)이었으며, 우울 증상의 여부, 우울 진단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우울 증상이 많고(남성 : OR=1.11, 여성 : OR=1.64), 과거 흡연자보다 현재 흡연자가 우울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 OR=1.05, 여성 : OR=1.89). 결론적으로, 남녀 모두 흡연자에서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 연관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흡연자의 우울 증상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우울 증상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FCTC가 세계 국가들의 담배광고금지 이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Hiilamo, H., & Glantz, S. (2016). FCTC followed by accelerated implementation of tobacco advertising bans. *Tobacco Control*, tobaccocontrol-2016. doi:10.1136/tobaccocontrol-2016-053007

본 연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이 각 국가의 담배광고 규제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WHO에서 수행한 2015년 세계흡연실태조사(Global Tobacco Epidemic)의 데이터와 국제 담배자료 센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FCTC 비준국과 비비준국의 5가지 영역, 즉 TV 및 라디오, 인쇄물, 옥외, 담배 판매점, 후원에 대한 광고규제 채택 여부(1997년, 2014년)를 조사하였다. 또한, FCTC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비준국이 비준 이후 몇 년 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FCTC가 2005년 발효된 이후 직·간접인 담배 광고에 대한 전면 규제 비율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저소득국가의 이행 개선 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CTC 비준 이후 TV 및 라디오(비준 후 1.27년), 옥외(비준 후 1.21년), 인쇄물(비준 후 1.16년)에 대한 규제 채택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TV 및 라디오 광고 규제는 국가의 소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FCTC 비준 이후 광고 규제 이행에 있어 큰 성과를 나타내었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세계의 FCTC 이행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의 적극적 광고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016. 8.
Monthly Highlights

이달의
이슈

이달의 이슈에서는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정,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안을 다룹니다.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국외 사례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연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전략



세계 각국이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 지정, 담뱃갑 포장 규제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담배업계다. 그들은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세워진 다양한 전략으로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규제 정책을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담배업계가 각국 정부의 담배사용 폐해 근절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을 수년간 써 왔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전문에서도 협약 당사국들에게 담배규제 노력을 저해하거나 전복시키려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주의하고 담배규제 추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담배업계의 행태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협약 제5조3항은 담배규제와 관련된 공공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협약 당사국이 자국 법에 따라 해당 정책을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이 정식 발효된 지 3년 후인 2008년 WHO FCTC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담배업계의 상업 및 기타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관련 공공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제5조3항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5.3 of the WHO FCTC)은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정책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은 담배규제 관련 공공보건 정책에 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에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협약 제5조3항 이행 가이드라인은 해당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 원칙에서는 **담배라는 건강 폐해 요인을 공급하는 담배업계의 이익과 공공보건 정책의 이익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의 추진과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

- 원칙 1. 담배업계의 이익과 공공보건 정책의 이익 간에는 근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 원칙 2. 당사국은 담배업계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상대할 경우 책임 있고 투명해야 한다.
- 원칙 3. 당사국은 담배업계와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운영 및 활동을 하는 자에게 책임 및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 원칙 4. 담배업계의 제품은 치명적이므로 담배업계의 설립 또는 운영상에 어떠한 특혜도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8가지 세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정부부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필요하고 불투명한 교류 금지, 담배업계의 이미지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공헌활동 규제 및 담배업계에의 특혜 제공 금지 등 인식 개선부터 업계에의 직접적 제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조치까지 상세히 나열되어 있어 협약 당사국이 국내법 또는 행정 조치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Recommendations)

1. 담배제품의 중독성 및 위해성과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을 저해하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2. 담배업계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조치를 수립하고 상호교류 시 투명성 확보
3. 담배업계와의 파트너십, 비구속력 또는 비강제성 협정 체결 거부
4. 정부 관리자 및 공무원과의 이해충돌 방지
5. 담배업계가 제공한 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 요구
6. 담배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되는 활동의 비정상화 및 가능하다면 이를 규제.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되는 활동도 포함
7. 담배업계에 특혜 미제공
8. 국가 소유의 담배업계를 모든 기타 담배업계와 동일하게 취급

WHO FCTC 제5조3항의 세계이행현황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년마다 실시되는 FCTC 이행보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169개 당사국 가운데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의 비율이 29.0%에서 59.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담배업계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응답한 당사국이 총 100개국으로 전차 보고 대비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문항 3.1.2.1.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이익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하고 있는가?

보고년도	보고서 제출 국가 수(A)	“예”라고 응답한 국가 수(B)	해당 조항 이행률(B/A)
2010	169	49	29.0%
2012	169	81	47.9%
2014	169	100	59.2%

※ 출처 :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담배업계의 국가 금연정책 저해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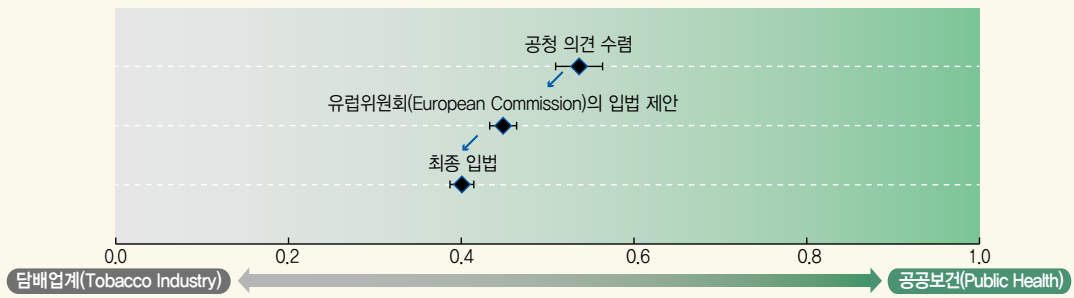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세계 각국이 공공보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담배규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규모의 물질·인적 자원을 이에 투입하고 있다.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활동은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전략으로 설명되고 있다.

로비활동을 통한 정책 입안 저지

담배업계는 담배규제 관련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및 입법절차에 개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 결정 관련 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담배산업에 유리한 보고서 또는 선물·향응을 제공하는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단순히 정책이 담배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인사와 강력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별 매출에 로비활동이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산업은 방위산업과 의료·제약산업에 뒤이어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산업으로 꼽혔으며, 미국 담배업계가 2014년에 로비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약 2,200만 달러(약 2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채택된 유럽연합(EU)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2014/40/EU))은 EU 역사상 가장 많은 로비 대상이 된 법으로 거론될 만큼 입법 절차 과정에서 담배업계의 로비 활동이 활발했다. 대표적으로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는 해당 법안의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160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고용했으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1/3 이상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에서 애초에 포함됐던 규격화 무(無)광고포장(plain packaging)¹⁾과 판매점 담배진열 금지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법안의 전반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규제 수준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1) 담배 제품 포장에 정해진 색깔과 글꼴로 브랜드 이름을 표시하고 그 외 로고, 색상, 상표,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제 조치. 자세한 내용은 2016년 금연이슈리포트 5월호(Vol.34) 참고.

입법 절차에 따른 EU 담배규제법(2014/40/EU) 내용 변화



※ 출처 : Costa, Hélia, et al. (2014).

위장단체(Front Group)를 이용한 반대여론 조성

담배업계가 흡연을 옹호하고 담배규제 정책에 반하는 논리를 직접 발언할 경우에는 미디어나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업계는 제3의 조직, 일명 위장단체(Front Group)를 앞세운다. 위장단체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입장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배업계의 후원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말한다. 2011년 4월 호주 정부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도입 법안이 완성된 후, 담배업계는 해당 법안이 당해 11월 상원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그중 대표적으로 사용된 전략이 바로 위장단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AAR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반대 잡지 광고



정책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규격화 무광고포장 도입이 소매점 내 담배판매 소요 시간을 늘릴 것이라 오도함

※ 출처 : Carter, Owen BJ, et al. (2011).

호주 담배회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호주소매상연합(Australian Retailer Association, ARA)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이하 AAR)'를 조직했다. AAR은 담배업계와 연계된 사실을 숨기고 규격화 무광고포장이 도입된 후 소매상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정책 반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이후 일부 유출된 내부문건에 의해 AAR이 담배업계로부터 약 5백만 달러(약 56억 원)의 재정 후원을 받은 담배업계의 위장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AAR은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내부문건에서 밝혀진 담배회사의 AAR 후원 금액

담배회사명	후원금액
호주임페리얼토바코(Imperial Tobacco Australia)	1,080,860 달러(약 11억 9,565만 원)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	2,200,000 달러(약 24억 3,364만 원)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2,161,720 달러(약 23억 9,129만 원)

※ 출처 : Tobacco Tactics,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

소위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한 마케팅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구성원의 복지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TV, 라디오, 인쇄물 등을 이용한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업계는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담배업계는 이른바 CSR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WHO가 담배업계의 CSR을 “내재적 모순(inherent contradiction)”이라고 지칭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활동의 문제점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담배나 담배회사에 대한 거부감 및 비판적 인식을 감소시켜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을 흡연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5개 담배회사가 2013년 한 해에만 약 210만 달러(약 23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은 담배업계가 펼치는 대표적인 CSR로 꼽힌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흡연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이 담배회사가 아닌 흡연 행위의 선택권을 가진 청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고도의 전략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의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왼쪽은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각해보고, 흡연하지 마세요. (Think, Don't smoke.)”라는 슬로건 사용, 오른쪽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화하세요, 자녀들이 들을 것입니다. (Talk, They'll listen.)”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흡연의 선택권과 폐해에 대한 책임이 청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함.

※ 출처 :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8).

정책의 예측 효과 및 관련 분야 연구 결과 오도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은 모든 만성질환의 핵심 위험인자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부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흡연 이외에 더 위험한 건강 위해요인이 존재함을 강조하며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특히, 담배업계는 간접흡연과 흡연의 유해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부인해왔으며,

국제적 연구조직을 구성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다른 요인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에 의해 담배업계 역시 자체적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담배업계는 국가 담배규제 정책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과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 개정안에 대해 대표적인 경제분야 정책연구소인 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는 소매상들에게 수천 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담배업계가 아담스미스연구소 및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 약 4만 4,000파운드(약 6,400만 원)를 후원한 사실이 미디어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해당 연구소들은 담배규제 정책을 자유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는 논리로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덧붙여, 호주가 규격화 무광고포장 정책을 도입할 당시 필립모리스는 담배제품 불법거래가 154%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한 회계회사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방법론은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등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정책 도입 후 불법 담배제품 판매율이 2.2%(2012년)에서 0.6%(2013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제소를 통한 정책 시행 지연 및 방해

담배회사는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규격화 무광고포장이 호주 상원의회를 통과한 후, 담배업계는 호주 정부가 자사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호주 헌법과 초국경 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호주 담배업계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저해를 위한 법적 대응

- 2011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 4개 사(社)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제기
 - 2012년 8월, 호주 고등법원(Australia's High Court)에서 호주 정부가 담배 브랜드 로고를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됨
- 2011년,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호주-홍콩 양자 협정(Australia-Hong Kong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위반 소송 제기
 - 2015년 12월, 중재재판소(Arbitration Court)에서 심리 관할권이 없음을 결정

또한, 최근의 다국적 담배회사와 우루과이 정부의 소송은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 담배업계가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2010년 필립 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법안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 ISD)'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우루과이 정부의 담배규제 법률이 정당하며, 필립모리스에 우루과이 정부가 법적 대응에 지출한 비용 700만 달러(약 7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담배회사의 패소로 끝이 났지만, 우루과이 정부의 소송 비용 규모 및 필립모리스가 우루과이 정부보다 더 많은 법률회사(각각 3개, 1개)를 고용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해당 배상액 이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담배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각 국가의 정책 문화 및 환경에 맞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담배업계와 정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교류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모두 대중에게 공개토록** 조치하는 국가들이 있다. **호주**의 경우, 보건부와 담배업계가 관련 규제 또는 정책과 관련하여 교류한 모든 내용이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호주는 보건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부처가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하여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로비스트는 정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합법적 활동이 가능하며, 로비에 관한 행동강령(Lobbying Code of Conduct)에 따라 정부 관계자가 로비스트와 교류한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해당 행동강령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하여 공개하고, 최대한 이를 배제하는 노력을 취해야 하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남용 또는 내부정보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담배업계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교류를 할 경우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11년에 발표된 담배규제계획(Healthy Lives, Healthy People: A tobacco control plan for England)에서는 정부부처와 담배업계 간에 이루어진 정책 관련 회의내용 전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이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담배업계와의 교류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담배업계 또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대와 교류할 경우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여 보건부뿐만 아니라 담배규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관계자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해외 파견공무원들이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해야 하는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담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의 판매나 판촉 관련 행사 관여, 담배업계에의 투자 권장, 담배업계로부터 직·간접적 재정 지원 수락,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FCTC 제5조3항의 내용을 직접 국내법 또는 정책에 언급하여 이행을 촉진**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18명의 정부부처 장관 및 기관장으로 이루어진 WHO FCTC 이행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WHO FCTC Implementation, CONICQ)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부 장관이 FCTC 제5조3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활동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하는 윤리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에는 정부대표가 담배업계와 접촉할 시 준수되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담배업계와의 교류는 공청회의 형식을 따라야 하며 담배업계와 접촉하는 정부대표는 관련 내용 및 참석자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무원 1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또한 WHO FCTC 이행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담배업계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며 참석비용을 정부에서 일체 부담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멕시코** 보건부 역시 담배업계와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및 교류에 대하여 협약 제5조3항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법 하에 보장되어 있는 정보에의 권리(right to information)에 따라 누구나 연방정부에게 담배업계와 정부부처간의 교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담배업계와 공무원의 교류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보건부와 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에서 담배업계 저해 활동으로부터 관료제 보호에 관한 공동 각서(Joint Memorandum Circular on Protection of the Bureaucracy against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를 발표하였으며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공공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태국** 보건부 역시 부처 공무원이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의 과정에서 담배업계 및 관련 인물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배업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조직까지 담배규제 관련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공무원이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담배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업계가 정책 또는 사업 관련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단체로 해석이 되어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FCTC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전문가 집단은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치하하면서 향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담배규제 추진을 위해 협약 제5조3항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담배규제 정책,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

담배업계가 국가의 금연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지연시키며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쇄신 노력에 적지 않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존속시키기 위함이다. 경제적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도한 규제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비추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이고, 우리가 규제하려는 대상은 공공보건 제1의 위험요소로 꼽히는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담배업계이다.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수적이고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실효성 있는 담배규제 정책의 시행이며, 이를 위해서는 담배업계의 전략적인 저해 활동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 영업행위라고 주장하는 담배업계의 다양한 활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고 보다 엄중한 잣대를 대야 하는 이유이다.



이달의 지표에서는 담배 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 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흡연 시작 연령

Average age of smoking initiation



지표의 개요 및 의의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시기라는 점에서 담배에 포함된 독성물질로 인한 유해성이 성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 흡연을 지속할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흡연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연령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고도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이 된 후 금연 성공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보건 측면에서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이른 시기에 흡연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흡연 시작 연령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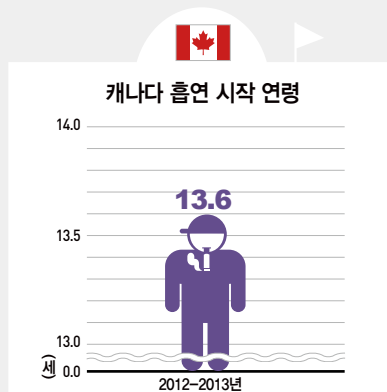
용어 및 지표 정의

흡연 시작 연령은 조사방법론에 따라 처음 흡연을 경험한 시기 혹은 정기적(최소 하루 1회 등) 흡연을 시작한 시기로 정의된다. 각 조사의 표본구성에 따라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대상이 상이하며, 흡연자 혹은 평생 흡연(경험)자를 기준으로 흡연 시작 연령을 물어본 후 조사 대상의 평균치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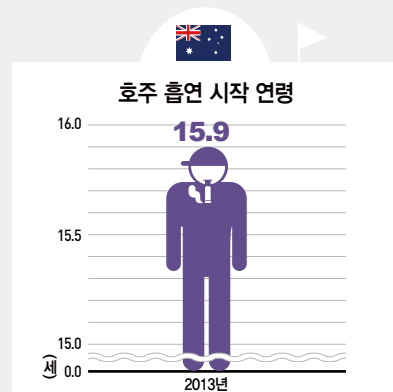
국내·외 최신동향

| 세계의 흡연 시작 연령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을 조사한 캐나다(6-12학년 대상)와 호주(14-24세 대상)의 경우, 각각 13.6세, 15.9세로 나타났으며 2.3세 정도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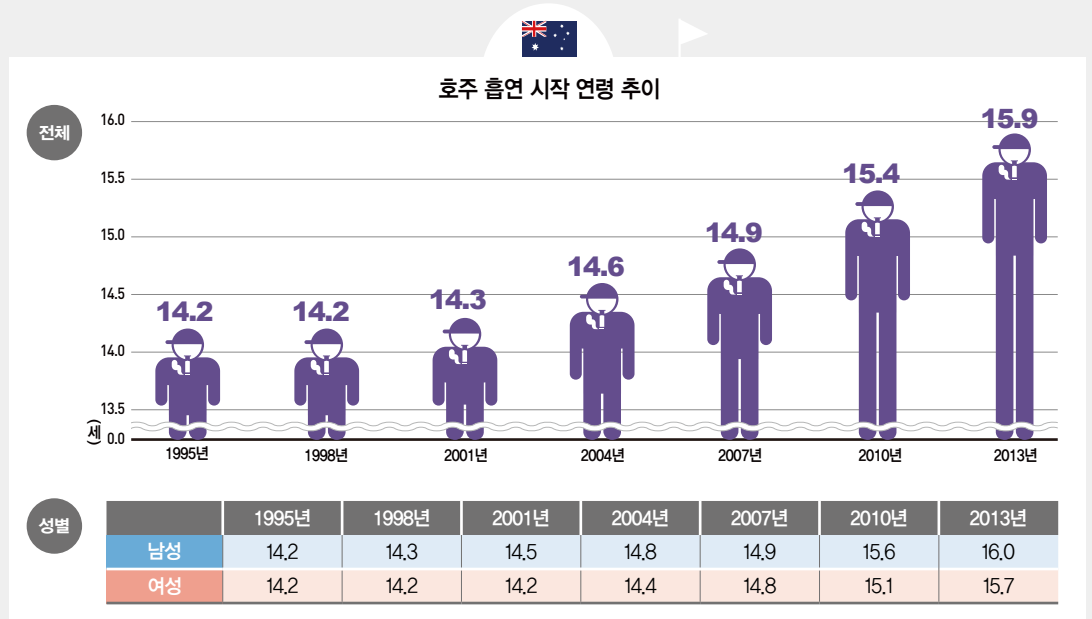


*6-12학년 대상, 처음 흡연 경험 기준 ※출처: Government of Canada, (2014).



*14-24세 대상, 처음 흡연 경험 기준 ※출처: AIHW,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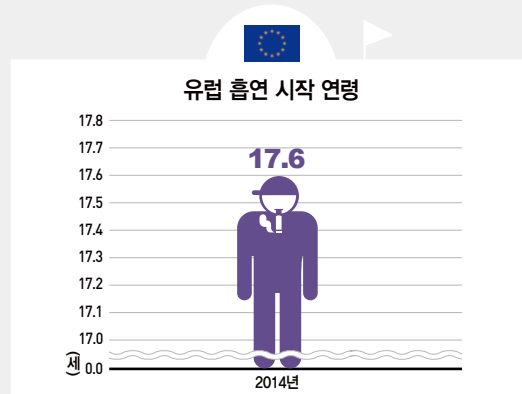
특히, 호주의 경우 '98년(14.2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어 해당 연령대에 대한 국가적 정책 효과가 반영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4-24세 대상, 처음 흡연 경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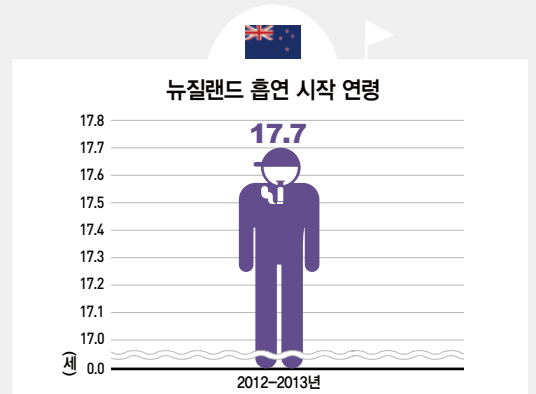
※출처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4).

정기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을 조사한 유럽(최소 주 1회)과 뉴질랜드(최소 하루 1회)는 각각 17.6세, 17.7세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성인담배사용조사(Global Adult Tobacco Survey)의 경우 22개국을 대상으로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을 산출하였는데, 해당 국가들 역시 모두 20세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3개 국가(아르헨티나, 인도, 카타르)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대상, 정기 흡연(최소 주 1회) 시작 기준

※출처 : EU, (2015).



*20세 이상 대상, 매일(최소 하루 1회) 흡연 시작 기준 ※출처 : Ministry of Health, (2014)

세계성인흡연조사(GATS) 실시 국가 흡연 시작 연령(2013년)

국가	남성	여성	국가	남성	여성
1 중국	19.5	-	12 말레이시아	17.2	-
2 베트남	19.1	-	13 브라질	17.1	17.3
3 나이지리아	18.3	-	14 이집트	17.1	-
4 인도	18.3	17.2	15 우크라이나	16.9	18.4
5 카타르	18.1	18.0	16 루마니아	16.7	18.0
6 인도네시아	17.6	-	17 터키	16.7	17.9
7 태국	17.6	18.4	18 파나마	16.7	17.4
8 폴란드	17.6	18.0	19 러시아	16.6	17.1
9 필리핀	17.6	19.2	20 멕시코	16.5	17.1
10 그리스	17.5	18.1	21 아르헨티나	16.5	16.1
11 방글라데시	17.4	-	22 우루과이	16.3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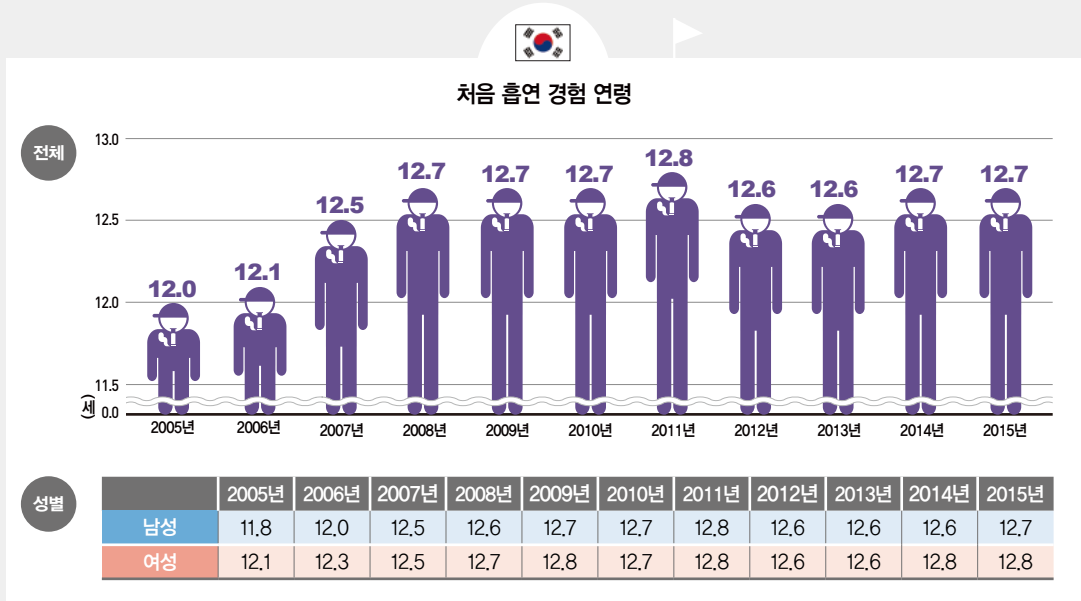
*20-34세 대상, 매일 흡연 시작 기준(해당 표본 수 부족으로 일부 산출 불가)

※출처 : CDC Foundation, (2015).

*2008-2013년 데이터 중 최근 데이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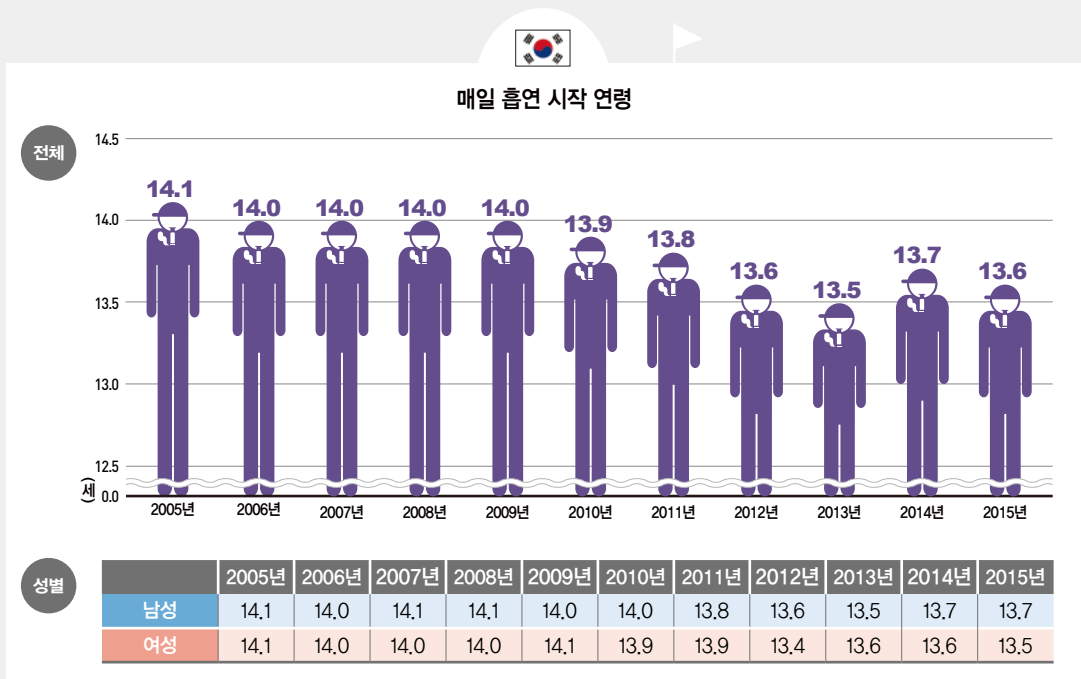
| 우리나라 흡연 시작 연령

우리나라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시작 연령을 조사하고 있으며, 평생 흡연경험자와 매일 흡연자를 기준으로 흡연 시작 연령을 산출하고 있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2.7세로 호주와 캐나다에 비해 낮으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도 13.6세로 유럽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최근 4년 간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담배에 접근하도록 하는 요인 및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흡연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5).



*최근 30일 동안 매일(최소 하루 한 개비) 흡연한 중·고등학생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5).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16). 담배업계의 정책 방해 전략. 담배규제정책정보. 제7호.
- 오미영. (2010). 담배회사의 전략적 사회 공헌 활동이 담배회사 이미지, 담배회사-공중 관계, 담배회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제14-1호.
- 이성규. (2012).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 5조 3항 이행을 위한 효과적 전략 모색. 한국건강증진재단.
- AFP. (2015). Cigarette Plain Packaging Lawsuit Fails. ENCA.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s://www.enca.com/life/cigarette-plain-packaging-lawsuit-fails>
- American Cancer Society. (2015). The Tobacco ATLAS. fifth edition. Available at http://3pk43x313gr4cy0lh3tctjh.wpengine.netdna-cdn.com/wp-content/uploads/2015/03/TA5_2015_WEB.pdf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4).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 detail report, 2013. Available at <http://www.aihw.gov.au/WorkArea/DownloadAsset.aspx?id=60129549848>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Big surprise: Tobacco Company Prevention Campaigns don't work. Available at <https://www.tobaccofreekids.org/research/factsheets/pdf/0302.pdf>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Toll of tobacco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at <https://www.tobaccofreekids.org/research/factsheets/pdf/0072.pdf>
- Carter, Owen BJ, et al. (2011). Measuring the effect of cigarette plain packaging on transaction times and selection errors in a simulation experiment. Tobacco control, tobaccocontrol-2011. Available at <http://tobaccocontrol.bmj.com/content/early/2011/09/23/tobaccocontrol-2011-050087.short>
- CDC Foundation. (2015). The GATS Atlas. Atlanta, GA. Available at <http://gatsatlas.org/downloads/GATS-whole-book-12.pdf>
- Cecilia Olivet & Alberto Villareal. (2016). Who really won the legal battle between Philip Morris and Uruguay?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6/jul/28/who-really-won-legal-battle-philip-morris-uruguay-cigarette-adverts>
- Costa, Hélia, et al. (2014). Quantifying the influence of the tobacco industry on EU governance: automated content analysis of the EU Tobacco Products Directive. Tobacco control, 23(6), 473-478. Available at <http://tobaccocontrol.bmj.com/content/23/6/473.full.pdf+html>
- Dorfman, L., Cheyne, A., Friedman, L. C., Wadud, A., & Gottlieb, M. (2012). Soda and tobacco indust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mpaigns: how do they compare?. PLoS Med, 9(6), e1001241. Available at <http://journals.plos.org/plosmedicine/article/asset?id=10.1371/journal.pmed.1001241.PDF>
- EU. (2015). Special Eurobarometer 429, Attitudes of Europeans towards Tobacco and Electronic Cigarettes. Available at 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s/ebs_429_en.pdf
- Government of Canada. (2014). Summary of results of the Youth Smoking Survey 2012-2013. Available at <http://healthycanadians.gc.ca/publications/healthy-living-vie-saine/youth-smoking-survey-2013-enquete-jeunes-tabagisme/index-eng.php>
- Isolda Agazzi & Alberto Villarreal. (2016). Uruguay wins the battle against Philip Morris.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www.alliancesud.ch/en/policy/trade/uruguay-wins-the-battle-against-philip-morris>
- Jamie Doward. (2013). Health groups dismayed by news 'big tobacco' funded rightwing thinktanks.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3/jun/01/thinktanksbigtobaccofundssmoking>
- K. S., & M. (2016). ISDS arbitration upholds Australia's plain packaging laws. EASTASIAFORUM.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www.eastasiaforum.org/2016/01/15/isds-arbitration-upholds-australias-plain-packaging-laws/>
- Ministry of Health. (2015). Tobacco Use 2012/13: New Zealand Health Survey. Available at <http://www.health.govt.nz/system/files/documents/publications/tobacco-use-2012-13-new-zealand-health-survey-dec14-v2.pdf>
-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8). The Role of the Media in Promoting and Reducing Tobacco Use – 6. Tobacco Companies' Public Relations Efforts. Available at http://cancercontrol.cancer.gov/brp/tcrb/monographs/19/m19_complete.pdf
- So, E. S., & Yeo, J. Y.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moking initi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sian nursing research, 9(2), 115-119. Available at http://ac.els-cdn.com/S1976131715000353/1-s2.0-S1976131715000353-main.pdf?_tid=728cba10-7664-11e6-bfc0-00000a0b0f01&acdnat=1473408627_14063464bb235d560d8007bc36da43b2
- Tobacco Tactics.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www.tobaccotactics.org/index.php/Alliance_of_Australian_Retailers
- Tobacco Tactics. EU Tobacco Products Directive Revision.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www.tobaccotactics.org/index.php/EU_Tobacco_Products_Directive_Revision
- Tobacco Tactics. Plain Packaging: Have Illicit Levels Risen in Australia?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www.tobaccotactics.org/index.php/Plain_Packaging:_Have_Illicit_Levels_Risen_in_Australia%3F
- Tobacco Tactics. Think Tanks.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www.tobaccotactics.org/index.php/Category:Think_Tanks
-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vailable at http://www.who.int/fctc/treaty_instruments/adopted/article_5_3/en/
- WHO. (2004). Tobacco Industr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vailable at http://www.who.int/tobacco/communications/CSR_report.pdf
- WHO. (2012).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 : A Global Brief. Available at http://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05/165254/Tobacco-Industry-Interference-A-Global-Brief.pdf
- WHO. (2014). 2014 Global Progress Report. Available at <http://www.who.int/fctc/reporting/2014globalprogressreport.pdf>
- WHO. Examples of implementation of Article 5.3 communicated through the reports of the Parties. Retrieved August 31, 2016, from http://www.who.int/fctc/parties_experiences/en/
- Will McKitterick, et al. (2014). Value for Money : How important is lobbying to industry? IBIS World. Available at <http://media.ibisworld.com/wp-content/uploads/2014/11/LobbyingDesign2.pdf>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문의 TEL 02-3781-3500 FAX 02-3781-2299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시오.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 9월호 예고

2016년 9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규제에 관하여 알아보니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 조치와 관련한 주요 쟁점 및 국외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봅니다.